

제308회 임시회
2012. 4. 18(수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건 설 소 방 위 원 회
전 문 위 원 김명희

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4월 06일

나. 회부일자 : 2012년 4월 10일

3. 제안이유

- 다중이용 시설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로 서민생활 불편,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고 범위를 명확히 규정
- 전문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
- 신고포상금을 현금 또는 소화기,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지급하여 소방안전망 확보에 기여

4. 주요내용

가. 신고대상 시설을 나열식으로 명문화(안 제3조)

- 다중이용업소, 대규모점포, 운수시설, 숙박시설, 복합건축물 등

나. 현재의 신고 1건당 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현금 또는 5만원 상당의 소화기,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(안 제9조)

다. 1인 월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“50만원”에서 “30만원”으로 하향 조정(안 제9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소방방재청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준칙인 「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개선안」을 도 조례에 반영하고,
- 서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비상구 폐쇄 등의 신고 대상 시설을 세부적으로 명기하는 한편,
- 당초 입법 취지인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급 기관의 지침에 따라 도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,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.
- 조문의 내용은 「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,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